

설비건설업계가 알아야 할 주요 신고사항 및 벌칙규정⑤

설비건설업을 하다 보면 챙겨야 할 서류가 한 두 가지가 아니다. 어떤 것은 시기를 맞추지 못해 벌금을 물 때도 있고, 어떤 것은 어떤 서류와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증이 많아진다. 이 때 도움을 받기 위해 관련기관 및 협회 등에 일일이 문의하기도 하지만 번거롭기 그지 없다.

설비건설업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알아두면 업무처리에 부담이 적을 뿐만 아니라 벌칙을 미리 피하게 돼 경영상 이익을 가져다 준다.

본지는 설비건설업체가 알아야 할 주요 신고사항 및 벌칙규정을 지난 9월호부터 연재한다.

<p>글 쓰는 순서</p> <p>II. 건설관련 법령 벌칙규정</p> <p>1. 벌칙의 종류</p> <p>2. 건설산업기본법 관련 벌칙</p> <p>1) 건설업의 등록, 영업범위 및 신고사항</p> <p>2) 건설공사 도급 및 하도급 계약</p> <p>3) 건설공사 시공 및 기술관리</p> <p>4) 건설공사 실적신고 및 입찰질서 문란행위 등</p>	<p>5) 건설기술관리법 등 타법령 및 기타사항</p> <p>6) 양벌규정</p> <p>7) 건설업관리지침 중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자에 대한 제재기준 지난 호</p> <p>3.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식의 벌칙</p> <p>1) 하도급법 적용범위 이번 호</p> <p>2) 하도급법령상 벌칙구조</p> <p>3) 원사업자의 의무사항 위반 다음 호</p> <p>4) 원사업자의 금지사항 위반</p>
--	--

3.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의 벌칙

1) 하도급법 적용범위

가. 하도급법상 건설하도급거래의 범위

(1) 용어의 정의

① 하도급거래

-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건설위탁 받은

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을 하고, 이를 위탁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을 시공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 또는 인도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는 행위

② 건설위탁 : 건설위탁은 다음의 두가지 범주를 포괄하는 개념

- 건설업자가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위탁하는 것
- 건설업자가 경미한 공사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
-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상의 '경미한 공사'의 개념
 - 1건 공사의 예정금액이 일반 5천만원 미만, 전문 1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
 - 조립·해체가 용이한 기계설비 등을 제작·공급하는 자가 직접 설치하는 경우

③ 원사업자가 될 수 있는 자의 범위

- (가)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경우
- (나) 연간매출액(시공능력평가액)이 3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받은 다른 중소기업자의 연간매출액 또는 상시고용종업원수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
- 공정거래법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
- ※ 사업자가 공정거래법에 의한 계열회사에 제조 등의 위탁을 하고 그 계열회사가 위탁받은 제조·수리 또는 시공행위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제3자에게 재위탁한 경우, 그 계열회사가 위 (가),

(나)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제3자가 그 계열회사에게 위탁을 한 사업자로부터 직접 제조 등의 위탁을 받는 것으로 하면 하도급법에 의한 수급사업자의 요건에 해당될 때에는 그 계열회사를 하도급법상 원사업자로 간주함

④ 수급사업자가 될 수 있는 자의 범위

- 원사업자로부터 제조 등의 위탁을 받은 중소기업자
- 공정거래법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제외

⑤ 발주자

- 시공을 원사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하며, 재하도급의 경우에는 원사업자를 말함

⑥ 중소기업자(건설)

-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
-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상기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중소기업자가 아님

(2) 하도급법 적용대상 요건

- ① 거래내용·거래주체·거래시기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하도급법 적용대상이 됨
- 거래내용 : 양당사자의 거래관계의 성격이 건설위탁에 해당되는지 여부
- 거래주체 : 거래관계의 양당사자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에 해당되는지 여부
- 거래시기 : 거래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을 경

과하였는지 여부

② 형식적 하도급관계와 사실상의 하도급관계가 다른 경우 사실상의 하도급거래를 기준으로 원·수급사업자 여부를 판단함

③ 건설업자의 제조위탁

- 건설, 건축공사에 소요·설치되는 (부속)시설물을 제조위탁하는 경우로서 규격 또는 성능 등을 지정한 도면, 설계도, 시방서, 사양서 등에 의하여 주문하는 경우

④ 하도급거래의 승계와 하도급법 적용여부

- 합병, 영업양수, 상속 등을 통하여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거래에 따른 전사업자의 제반 권리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봄
- 권리의무를 승계한 사업자는 승계한 시점에서 당사자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하도급거래에 따른 당사자로 봄
- 건설관계 법령에 의하여 면허·등록·지정을 받은 권한을 양수한 자는 양수이전(양수시점에서 이미 시공 완료된 공사는 제외)의 공사부분에 대하여도 하도급거래 당사자로 봄
- 건설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, 면허나 등록의 취소, 시공자의 지위상실 및 기타 사유로 자격을 상실한 사업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동 처분전의 공사를 계속 시공할 경우에는 같은 처분이전의 공사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처분이후의 공사부분에 대해서도 하도급거래 당사자로 봄

나. 하도급법 적용대상이 아닌 거래유형

(1) 원사업자, 수급사업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래

- 원사업자의 연간매출액이 20억원(제조업, 도·소매업) 또는 30억원(건설업, 엔지니어링 활동업, 소프트웨어사업 및 건축설계업) 미만인 경우
- 원사업자가 대기업자가 아닌 중소기업자로서 연간매출액 또는 상시고용종업원수가 수급사업자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하는 경우
- 수급사업자가 대기업이거나 30대 재벌 기업집단 소속 중소기업인 경우

(2) 무자격업체와의 거래

- 수급사업자가 무등록업체인 경우

(3) 원도급 거래

- 하도급거래가 아닌 발주자와 원사업자간의 거래

(4) 단순 채권·채무 등 사적인 민사거래

- 개인간의 거래
- 근로자(일용노동자), 건설기술자 등의 고용계약에 따른 분쟁
- 건설장비의 임대차에 관한 분쟁

(5) 하도급법이 정하는 제조위탁, 건설위탁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

- 범용성 있는 대체물의 주문생산이 아닌 단순 구매의 경우
- 회사에서 사용하는 책상, 의자 등 자체소비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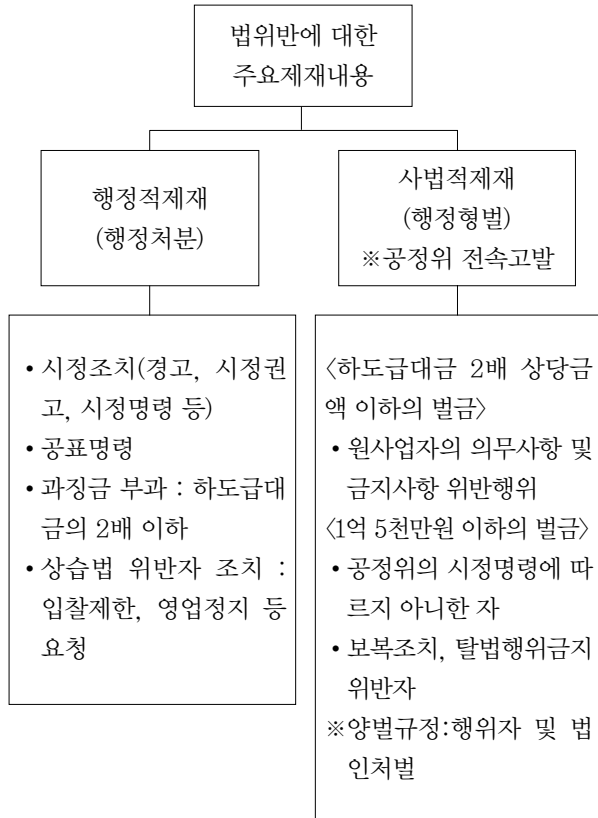
물품의 위탁의 경우

- 전기공사업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일반건설업자가 전기공사를 위탁한 경우
- 엔지니어링활동이나 건축설계를 업으로 하지 않는 건설업자가 건축설계를 위탁한 경우
- 건설장비를 단순 임대한 경우

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 또는 명령할 수 있음

-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서 직접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
-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을 받은 원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할 것을 명할 수 있음

2) 하도급법령상 벌칙구조



가. 시정조치(법제25조)

-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의 규정에 위반한 원사업자 및 발주자에 대하여는 당해 위반행위

나. 과징금(법제25조의3,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)

- 하도급계약에 관한 서면을 사전에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서면을 교부한 원사업자(법제3조)
-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지 아니한 자 또는 허위의 서류를 작성·교부한 원사업자나 수급사업자(법제3조)
- 부당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하도급 받도록 강요하는 원사업자(법제4조)
- 수급사업자에게 물품·장비 등을 구입 또는 사용하도록 강요하는 원사업자(법제5조)
- 선급금 지급 규정을 위반한 원사업자(법제6조)
- 내국신용장을 수급사업자에게 개설하여 주지 아니한 원사업자(법제7조)
- 부당하게 공사목적물을 수령거부한 원사업자(법제8조)
- 공사의 준공 또는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원사업자(법제9조)
- 공사 목적물을 부당하게 반품하는 원사업자(법제10조)

-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는 원사업자(법제11조)
-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 청구행위를 하는 원사업자(법제12조)
- 하도급대금 지급규정을 위반한 원사업자(법제13조)
-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 않은 원사업자(법제13조의2)
-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사유 발생시 이에 위반하여 직접지급하지 아니한 발주자(법제14조)
- 관세 등 환급받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(법제15조)
-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해주지 않는 원사업자(법제16조)
-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하도급대금을 물품 등으로 지급한 원사업자(법제17조)
-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부당히 간섭한 원사업자(법제18조)
- 원사업자의 범위반사실을 관계기관에 신고한 것을 이유로 보복조치를 한 원사업자(법제19조)
- 실질적으로 하도급법의 적용을 면탈하기 위하여 탈법행위를 한 원사업자(법제20조)

다. 징역 또는 벌금(법제29조,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)

- 법에 의한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, 공무원 또는 협의회에서 하도급거래에 관한 분쟁의 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자가 직무상 비밀엄수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

라. 벌금(법제30조)

(1)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벌금(법제30조제1항)

- 부당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하도급 받도록 강요하는 원사업자(법제4조)
- 수급사업자에게 물품·장비 등을 구입 또는 사용하도록 강요하는 원사업자(법제5조)
- 선급금 지급 규정을 위반한 원사업자(법제6조)
- 내국신용장을 수급사업자에게 개설하여 주지 아니한 원사업자(법제7조)
- 부당하게 공사목적물을 수령거부한 원사업자(법제8조)
- 공사의 준공 또는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원사업자(법제9조)
- 공사 목적물을 부당하게 반품하는 원사업자(법제10조)
-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는 원사업자(법제11조)
-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 청구행위를 하는 원사업자(법제12조)

(2) 1억 5천만원 이하 벌금(법제30조제2항)

- 하도급대금 지급규정을 위반한 원사업자(법제13조)
- 관세 등 환급받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(법제15조)
-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해주지 않는 원사업자(법제16조)
-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하도급대금을 물품 등으로 지급한 원사업자(법제17조)

(2) 1억 5천만원 이하 벌금(법제30조제2항)

-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부당히 간섭한 원사업자

(법제18조)

- 원사업자의 범위반사실을 관계기관에 신고한 것을 이유로 보복조치를 한 원사업자(법제19조)
- 실질적으로 하도급법의 적용을 면탈하기 위하여 탈법행위를 한 원사업자(법제20조)
-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(시정조치·권고 및 위반사실 공표 등)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(법제25조)

(3) 3천만원 이하 벌금(법제30조제3항)

-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법 위반행위의 조사 및 의견청취 등을 하기 위하여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 위촉을 하였으나 허위의 감정을 한 자(법제27조)

마. 과태료(법제30조의2)

(1)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(법제30조의2 제1항)

- 공정위 조사 및 의견청취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

- 공정위에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,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
-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자

(2)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(법제30조의2 제2항)

- 공정위의 심결시 심판정의 질서유지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

바. 양벌규정(법제31조)

-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·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벌칙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함

사. 고발(법제32조)

- 제30조의 벌칙에 해당하는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음



Heaven – 천당

Son: "Daddy, do lions go to heaven?" Dad: "Nope."
 Son: "How about a minister?" Dad: "Of course, he'll go to heaven."
 Son: "Well, suppose a lion eats a minister?"

아들: "아빠, 사자는 천당에 가?" 아빠: "못 가."
 아들: "그럼 목사님은?" 아빠: "그야 물론 천당에 갈 테지."
 아들: "그러면 사자가 목사님을 잡아먹었다면 어떻게 되지?"

「재미있는 영어이야기에 확 빠져들기」 중에서